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0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황명선·이광희·오세희

이병진 · 장종태 · 김현정

김우영 • 박수현 • 모경종

문진석 • 이정문 • 송재봉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,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,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특히,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, 즉 국가안보와 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%이상, 지방자치단체는 20%이상으로 명시하며,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

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"5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전단 중 "보험료의 일부와"를 "보험료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여야 하고,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일부를"을 "100분의 20이상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 | 수립·시행) ① ------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 업재해보험(이하 "재해보험"이 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 회 또는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 시8조제1항에 따른 중 앙 수산업 ·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 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 다)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여 --- 3년----야 한다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재정지원) ① 정부는 예산 제19조(재정지원) ① ----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 ----- 보험료(「재난 및 안전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관리 기본법 _ 제60조에 따른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운영비"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된 보험료를 포함한다)의 100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분의 70이상을 지원하여야 하 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고, ---.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---- 100분의 20이상을 ---

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